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의 안	95-30
번 호	

제출년월일 : 1995. 7.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재무과)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 5.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95조

3.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안 제4조)
- 조례 제37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당초 및 변경계획은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도록 규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 공유림에 대한 관리계획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 부서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37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및 통보 규정을 신설함(안 제37조의2)
 -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 다른 법령에 의해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한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신설함(안 제39조의3)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4조(중요재산) ①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 2억 5천만원이상</p> <p>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p> <p>② 토지의 경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p> <p>③ 중요재산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1.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p> <p>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p> <p>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p> <p>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p>	<p>제4조(삭제)</p>

현행	개정 (안)
<p>5. 분할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p> <p>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 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 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결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삭제)</p> <p>③ (삭제)</p>

현행	개정 (안)
<p>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7조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p> <p>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신설) 제39조의3(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정 1988. 5. 16 조례 제 16호]
 개정 1990. 7. 18 조례 제161호
 1991. 4. 13 조례 제197호
 1992. 2. 27 조례 제226호
 1993. 12. 22 조례 제267호
 1994. 12. 22 조례 제323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동장·보건소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4 조(중요재산) 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2억 5천만원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
- ② 토지의 경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③ 중요재산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5. 분할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5 조(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백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의 100분의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2.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제 8 조(처분재원 비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 10 조(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 2 장 행정재산등의 관리

제 11 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위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3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시가 1천만원이하의 기타재산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3 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② 삭제(1994. 12. 22 조례 제323호)

제 14 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 용 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증서 제출
6. 사용허가표지 부착
7.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
8.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 15 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 3 장 잡종재산관리

제 16 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 17 조(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지구,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8 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19 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 20 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한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 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 22 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1994. 12. 22 조례 제323호)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4. 영 제9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물건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 23 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

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1.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 23 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신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신설 1992. 2. 27 조례 제266호)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륜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제 24 조 (토석채취료등) ①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5 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

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3.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 26 조(대부료의 납기) ① 구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② 계약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 27 조(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서는 아니된다.

제 28 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 29 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액
6. 대부요율
7. 대 부 료
8. 대부료 납일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0 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31 조(실태조사) ①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2. 대부료 수납여부
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관리처분 여부
4.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유임야관리

제 32 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33 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조립, 개간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 34 조(삭제 1993. 12. 22 조례 제267호)

제 35 조(삭제 1993. 12. 22 조례 제267호)

제 35조의2(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 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6 조(삭제 1993. 12. 22 조례 제267호)

제 5 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 37 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 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38 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대부 및 사용허가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기부채납

제 39 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이 동일인 소유의 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동항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

다.

제 40 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을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 41 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 42 조(부당한 조건배재)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3 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7 장 청 사 관 리

제 44 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구청장은 구·동 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 확보등을 고려하여 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광역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조·위치 부

적등으로 한다.

제 45 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 46 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 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 47 조(시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0. 7. 18 조례 제161호)

제 48 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 8 장 관 사 관 리

제 49 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실·국장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

제 50 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관사 : 부구청장 관사
3. 3급관사 : 1급 내지 2급관사 이외의 관사

제 51 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 52 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 53 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 54 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 55 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기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세트, 커튼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

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함)

제 56 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을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 57 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 58 조(인계인수등)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9 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방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 9 장 보 칙

제 60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1 조(준용) 국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 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④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0. 7. 18 조례 제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 4. 13 조례 제197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예)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개정 1992. 2. 27 조례 제226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예)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3. 12. 22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12. 22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